

제420회 임시회
'24. 9. 4.(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3. 제안사유

-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채용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원장 임용 체제를 ‘비상근’ 에서 ‘상근’ 으로 변경(안 제8조)
- 원장 보수지급 기준 명시(안 제13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조직과 사업의 통합을 통해,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조직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상근직’ 원장으로 임용하고, 직책에 따른 업무와 책임 등을 고려한 보수지급 기준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현행 ‘비상근’ 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했던 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 으로 변경하여 임용토록 함.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조직과 사업을 통합·총괄하고 있어, 관련한 청소년 지원 전반을 이끄는 원장은 관련 분야 업무 경력과 전문성 등을 통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비상근’ 원장체제의 경우 성격이 다른 조직의 업무와 직원 관리 등을 총괄·조정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진흥원 원장을 ‘상근’ 으로 임명해 보다 더 책임있는 조직 운영과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보여짐.

- 다만, 원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에서는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선발자격기준을 ‘교육·청소년 등 관련 분야

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사람을 ‘상근’ 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비추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직원 선발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에서 ‘공개채용’ 원칙과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참고]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센터장 이하 직원의 선발자격기준 (제6조 관련)

※ 별표 내용 중 일부 발췌

센터별 직급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지도)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관련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청소년(지도)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청소년(지도) 분야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청소년(지도)관련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청소년 지도 등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4. 청소년지도자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

- 이에, 원장의 선발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도 시행규칙에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후속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13조에서는 제2호 단서 중 “비상근”을 “상근”으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보수를 지급한다”로 수정함.

- 그동안 ‘비상근’으로 임용된 원장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한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상근’ 원장으로 임용하며 직책에 따른 책임과 업무수행의 적극적 참여 등에 따른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됨.

○ 한편,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원장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 제8조제1항⁴⁾에 따라 현직 원장(최초 임용시 ‘비상근’으로 임용)이 연임을 할 경우, 조례 개정의 취지인 ‘청소년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근직 원장으로 임용’이라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못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정책 발굴 및 추진과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

4)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8조(임용)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채용을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안 예고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음.

- 다만,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의 진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상근직 원장의 임용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청소년정책 발전 등 조례 개정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